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74

발의연월일: 2020. 9. 29.

발 의 자:김병기・안민석・서영교

이정문 • 권칠승 • 기동민

김민기 · 조승래 · 안규백

고용진・황 희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보충역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다른 보충역에 대해서는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.

이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이 현역병으로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될 경우, 현역병으로서의 임무수행기간이 현저히 짧아 군 지휘 부담이 가중되는

문제가 있음.

이에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23조의4 및 제41조).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제2항 전단 중 "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.

제41조제3항 중 "현역병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승선근무예비역,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,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
제23조의4(승선근무예비역의 편 제2 입취소 및 의무부과) ① (생략)
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 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.

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

제23조의4(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

정

아

개

(2) -----

\_\_\_\_\_

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.

<u><삭 제></u>

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<신 설>

제41조(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) ① ·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 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 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

<u>4</u>	저	]1항	에	叫i	라	승	선급	구무	예	川
<u>역</u>	의	편약	일이	ネ	소	된	사	람은	<u>&gt;</u>	승
<u>선</u>	근.	무예	비현	0	로	じ	시	편	입	하
여	뱒	]역의	기무	를	٥]	행:	하기	) ह	主	<u>수</u>
없 I	<u> 구.</u>									

제41조(전	문연구요원과	산업기능
요원의	편입취소 및	의무부과)
(1) • (2)	(현행과 같음)	)

3	 	 	 	 	 	 -	_
	 	 	 	 	 	 -	_
	 	 	 	 	 	 	_

-----대통령 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 |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 은 복무기간을 현역병-----.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. <삭 제>

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

 할 수 있다.